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6. xx ~ 6. xx.)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민원처리담당자 법적 지원 총괄

제7조제6항 중 “학교교수학습혁신과·교육콘텐츠정책과·기초학력진로교육과·학생건강정책과·인성체육예술교육과·사회정서성장지원과·학교폭력대책과·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를 “학교교수학습혁신과·교육콘텐츠정책과·동북아역사대응팀·기초학력진로교육과·학생건강정책과·인성체육예술교육과·사회정서성장지원과·학교폭력대책과·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를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사항”을 “사항(역사 및 한국사 관련 교과(목) 또는 내용요소는 제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수립·시행”을 “수립·시행(역사 및 한국사 관련 교과(목) 또는 내용요소는 제외)”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3호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7항까지를 제11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관한 사항
2. 해외 교과서 오류 시정에 관한 사항
3.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지원
5. 초·중등학교 독도 교육에 관한 사항
6. 초·중등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7. 역사 및 한국사 관련 교과(목) 또는 내용요소를 포함한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역사 및 한국사 관련 교과(목) 또는 내용요소를 포함한 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의 제목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을 “(교육복지늘봄지원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을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복지돌봄지원국에 교육복지정책과·유아교육정책과·방과후돌봄정책과”를 “교육복지늘봄지원국에 학생맞춤통합지원과·늘봄학교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복지정책과장”을 “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제40호 및 제4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부터 제3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이주배경학생 지원 기본계획 수립
28. 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법령 제·개정
29. 이주배경학생 중장기 전망 및 분석
30.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위한 사회통합대책 수립
31. 이주배경학생 실태조사 추진
32.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33.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34.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대상 다문화교육 지원
35. 이주배경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진로·진학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
36.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회인식 개선 정책 수립·추진
37. 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정책 수립
38. 이주배경학생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
39. 이주배경학생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제8조제4항제40호(중전의 제29호) 중 “교육복지정책과”를 “학생맞춤통합지원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중전의 제30호) 중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아교육정책과장”을 “돌봄학교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의”를 “돌봄학교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제4호 중 “영아”를 “영유아”로 한다.

1. 돌봄학교 정책 총괄
2. 돌봄학교 기본계획 수립·시행
3. 돌봄학교 관련 법령·제도개선
4. 돌봄학교 관련 재정·인력 운영
5. 돌봄학교 관련 각종 운영가이드 라인 제작·배포
6. 돌봄학교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7. 돌봄학교 시설 및 아동친화적 공간개선
8. 초등돌봄 및 초등 방과후 지원에 관한 사항
9. 돌봄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10. 돌봄학교 관련 관계부처와의 프로그램·공간·인력 등 협력·연계
11. 돌봄학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프로그램·공간·인력 등 협력·연계
12. 돌봄학교 관련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프로그램 협력·연계
13. 돌봄학교 관련 지역대학과의 프로그램·공간·인력 등 협력·연계
14. 초등돌봄 서비스 간 격차 완화
15. 교육 기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6. 교육 기부 관련 공익 법인 관리
17. 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
18. 시·도별 교육 기부 운영 상담 지원

19. 늘봄학교 현장 안착 지원

20. 시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인프라 구축 현황 점검·관리 및 컨설팅

21. 늘봄학교 현장방문 등 각종 행사 운영 및 지원

22. 늘봄학교 관련 각종 유관 단체 소통·협업에 관한 사항

23. 중등 방과후학교 지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유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영유아지원관으로 하며, 영유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영유아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조제3항 제19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영유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영유아정책국에 영유아정책과·영유아재정과·영유아안전정보과·영유아기준정책과·영유아교원지원과 및 교육보육과정지원과를 둔다.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⑥ 영유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영유아 보육·교육 법령의 제·개정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4. 유아교육·보육 실태조사

5. 보육통계 생산 및 관리

6.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7.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8.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9. 유치원·어린이집 지도·감독

10. 유치원·어린이집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

11.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지도·감독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립 유치원 지원 총괄

13.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지원

14. 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육진흥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15. 영유아 단체·기관 협력 및 국제교류

16.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

17. 영유아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1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19. 부모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0.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관리

21. 시간제 보육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영유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영유아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2. 영유아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및 결산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
4. 유치원·어린이집회계 운영 지원
5.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재정투자
6.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7.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
8. 유치원·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9. 표준유아교육비,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지원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표준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12.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13. 유아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
14.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15.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
1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액 결정
17. 영유아 보육·교육비 부정수급 방지
18. 영유아 학부모 부담 경감

19. 유치원·어린이집 설립·운영 지원

20. 유치원·어린이집 신설·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

21. 유치원·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수립 및 관리

22.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설립·운영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지원

24.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

25.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26.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27. 영아·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

28.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⑧ 영유아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신체·정서·건강·보건 등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감염병 예방
3. 영·유아 안전 등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교통안전 교육 지원
5. 영·유아 건강·보건·안전 관련 교직원 연수
6. 영·유아 학대 예방
7.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등에 관한 사항
8. 유치원·어린이집 시설·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항
9. 유치원·어린이집 통학버스 등에 관한 사항

10.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건강·보건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안전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급식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영유아 정보화 총괄

15. 유치원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16.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지원

17.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18. 유치원 나이스시스템 운영 지원

19. 어린이집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20. 누리과정 포털 및 어린이집 아이사랑시스템 운영 지원

21. 영유아 정보화 시스템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영유아 정보화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영유아 정보화 시스템 관련 타 부처 연계 협력

24.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의 운영 및 관리

⑨ 영유아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총괄

2.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유형별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기준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관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총괄

6.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단위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이관 지원 및 조정

8.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이관 및 기능 조정

9.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영유아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인사제도 총괄

2. 영유아교원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3. 영유아교원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4.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 정원·배치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의 임용 및 공모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8.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9. 유치원·어린이집 보육·교육활동보호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어린이집 근무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교원 평가에 관한 사항
12.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14.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5. 유치원·어린이집 기간제 교사, 강사 및 보조·대체교사 등에 관한 사항
16.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 정원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원장의 임용 및 공모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복무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보수체계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교사처우개선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보육·교육 활동 보호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근무여건개선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교원평가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교원 양성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경력 및 자격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임용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영유아 통합 교원 양성기관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운영
 29. 영유아 통합 교원 양성 관련 교직과정의 설치·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 ⑪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2. 유치원·어린이집 학사운영 지원
 3.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4. 영유아 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
 5.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6.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일수에 관한 사항 및 운영지원
8. 유치원·어린이집 체험학습 운영 지원
9. 영유아 이음교육에 관한 사항
10.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보육·교육과정 등 개편 지원
11.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보육·교육과정 프로그램 개편 지원
12. 시간연장형·종일형·방과후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13. 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정책 수립·시행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4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640”을 “692”로 하고, 특정직 계 “85”를 “91”로 하며, 교육연구관 “18”을 “20”으로 하고, 교육연구사 “53”을 “57”로 하며, 일반직 계 “549”을 “595”로 하고, 고위공무원단 “11”을 “13”으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5”를 “16”으로 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2”를 “36”으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

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7”을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194”를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208”로 하며,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37”을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사회복지주사 또는 편사연구사 148”로 하고,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2”를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8”로 하며, “행정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식품위

생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 또는 전산서기 21”을 “행정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보건서기·식품위생서기·시설서기·방재안전서기·사회복지서기 또는 전산서기 23”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동북아역사대응팀은 2027년 6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교육콘텐츠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

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2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7항, 제9조의2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5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의7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9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제21조제3항제4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제2호,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2항·제7항, 제29조제3항제2호, 제30조의2제3항제4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2조의2제1항·제3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2조의4제3항제3호, 제35조제1항·제2항, 제35조의3제4항, 제35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의5제2항, 제35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6항·제7항, 제3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9제1항제4호, 제38조의3제1항·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2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3호가목4)가)⑦, 같은 표 같은 목 4)바)① 단서, 같은 표 같은 목 4)바)⑤, 같은 표 같은 목 4)아)⑤, 같은 표 같은 목 4)자)⑤, 별표 1의2 제2호·제5호, 별표 4 제2호 비고 제2호다목, 같은 표 같은 호 비고 제2호라목 단서, 같은 표 같은 호 비고 제2호마목, 별표 8 제2호가목1) 단서, 같은 표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같은 호 바목2)·4), 같은 표 제3호나목3) 단서, 같은 표 같은 호 라목4) 후단, 별표 8의2 제2호 다음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4호, 별표 8의3 제1호자목, 같은 표 제2호나목·라목·마목·바목, 별표 8의4 제4호,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어린이집 개요란의 다음 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변경사유란의 다음 란, 별지 제18호의2서식 행정제재처분 등 사실확인 동의서란의 다음 란, 별지 제18호의3서식 행정제재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제재처분 받은 사실란의 다음 란,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보육교직원란의 다음 란,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변경사유란의 다음 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32조의3제2항,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보건복지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 제20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의2제6항, 제2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제38조제3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제30조 단서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를 “국가교육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자녀인 영유아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육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을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영유아 보육·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를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로 한다.

■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 [별표 1의2]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692
·	·
일반직 계	595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 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 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 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5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 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 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또는 편 사연구관	206
·	·

■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별표 7]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2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	·
2) 차관보	·	·
3) 사회정책협력관 사회 정책총괄담당관	·	·
4) 영유아정책국 영유아 지원관	<u>1명</u> (고위공무원단 나급)	<u>2027년 3월 31일까지</u>
5) 영유아정책국 영유아 교원지원과	<u>4명</u>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u>2027년 3월 31일까지</u>
6) 영유아정책국 교육보 육과정지원과	<u>4명</u> (4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교육 연구사 2명)	<u>2027년 3월 31일까지</u>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획조정실) ① ~ ⑩ (생략)	제3조(기획조정실) ① ~ ⑩ (생략)
⑪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⑪ (생략) ----- -----.
1. ~ 12. (생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u>민원처리담당자 법적 지원 총괄</u>
제7조(책임교육정책실) ① ~ ⑤ (생략)	제7조(책임교육정책실) ① ~ ⑤ (생략)
⑥ 책임교육정책실에 <u>학교교수 학습혁신과·교육콘텐츠정책과·기초학력진로교육과·학생건강정책과·인성체육예술교육과·사회정서성장지원과·학교폭력대책과·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u> 및 학부모정책과를 둔다.	⑥ ----- <u>학교교수 학습혁신과·교육콘텐츠정책과·동북아역사대응팀·기초학력진로교육과·학생건강정책과·인성체육예술교육과·사회정서성장지원과·학교폭력대책과·교원정책과·교원양성연수과</u> ----- -----.
⑦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⑦ ----- -----,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

⑧ (생략)	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⑨ (생략)	⑧ (현행과 같음)
1.·2. (생략)	⑨ (생략)
3.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질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현행과 같음)
	3. ----- ----- --- 사항(역사 및 한국사 관련 교과(목) 또는 내용요소는 제외)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11. 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시행	11. ----- 수립·시행(역사 및 한국사 관련 교과(목) 또는 내용요소는 제외)
12. ~ 17. (생략)	12. ~ 17. (현행과 같음)
18. <u>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관한 사항</u>	<삭 제>
19. <u>해외 교과서 오류 시정에 관한 사항</u>	<삭 제>
20. <u>동북아 역사문제 대책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u>	<삭 제>
21. <u>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지원</u>	<삭 제>

22. 초·중등학교 독도 교육에 <u>관한 사항</u>	<u><삭 제></u>
23. 초·중등학교 역사교육 활 <u>성화 지원</u>	<u><삭 제></u>
24. (생 략)	24.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⑩ 동북아역사대응팀장은 다음 <u>사항을 분장한다.</u> 1. <u>외국의 역사 왜곡 대응에 관</u> <u>한 사항</u> 2. <u>해외 교과서 오류 시정에 관</u> <u>한 사항</u> 3. <u>동북아 역사문제 대책 관련</u> <u>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u> 4. <u>동북아역사재단의 운영 지원</u> 5. <u>초·중등학교 독도 교육에 관</u> <u>한 사항</u> 6. <u>초·중등학교 역사교육 활성</u> <u>화 지원</u> 7. <u>역사 및 한국사 관련 교과</u> <u>(목) 또는 내용요소를 포함한</u> <u>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등 질 관</u> <u>리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u> <u>항</u> 8. <u>역사 및 한국사 관련 교과</u> <u>(목) 또는 내용요소를 포함한</u> <u>검정도서 검정 계획의 수립·시</u>

⑩ ~ ⑰ (생 략)	<u>행</u>
제8조(교육복지돌봄지원국) ① 교 <u>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고위공</u> <u>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u> <u>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u> <u>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u> <u>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u> <u>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제8조(교육복지돌봄지원국) ① 교 <u>육복지돌봄지원국장</u> ----- ----- ----- ----- -----.
② <u>교육복지돌봄지원국에 교육</u> <u>복지정책과·유아교육정책과·방</u> <u>과후돌봄정책과 및 특수교육정</u> <u>책과를 둔다.</u>	② <u>교육복지돌봄지원국에 학생</u> <u>맞춤통합지원과·돌봄학교정책</u> <u>과</u> ----- -----.
④ <u>교육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u> <u>항을 분장한다.</u> 1. ~ 26. (생 략)	④ <u>학생맞춤통합지원과장</u> ----- -----.
27. <u>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u>	1. ~ 26. (현행과 같음) 27. <u>이주배경학생 지원 기본계</u> <u>획 수립</u>
28. <u>학생·학부모의 다문화 이해</u> <u>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u> <u><신 설></u>	28. <u>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법</u> <u>령 제·개정</u> 29. <u>이주배경학생 중장기 전망</u> <u>및 분석</u>
<u><신 설></u>	30. <u>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위한</u> <u>사회통합대책 수립</u>
<u><신 설></u>	31. <u>이주배경학생 실태조사 추</u>

	<u>진</u>
<신 설>	32. <u>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u>
<신 설>	33. <u>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u>
<신 설>	34. <u>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대상 다문화교육 지원</u>
<신 설>	35. <u>이주배경학부모 대상 교육 과정, 진로·진학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지원</u>
<신 설>	36. <u>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회인식 개선 정책 수립·추진</u>
<신 설>	37. <u>이주배경학생 교육을 위한 교원 양성 정책 수립</u>
<신 설>	38. <u>이주배경학생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보급</u>
<신 설>	39. <u>이주배경학생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u>
29. <u>교육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관련 디지털 전환 대응에 관한 사항</u>	40. <u>학생맞춤통합지원과</u> ----- ----- ---
30. <u>그 밖에 교육복지돌봄지원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u>	41. ----- <u>교육복지돌봄지원국</u> ----- -----
⑤ <u>유아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u>	⑤ <u>늘봄학교정책과장</u> -----

항을 분장한다.	-----.
1. <u>유아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1. <u>늘봄학교 정책 총괄</u>
2. <u>유아교육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u>	2. <u>늘봄학교 기본계획 수립·시행</u>
3. <u>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운영 지원</u>	3. <u>늘봄학교 관련 법령·제도개선</u>
4. <u>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시행</u>	4. <u>늘봄학교 관련 재정·인력 운영</u>
5. <u>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u>	5. <u>늘봄학교 관련 각종 운영가이드 라인 제작·배포</u>
6. <u>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운영</u>	6. <u>늘봄학교 실태조사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u>
7. <u>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교류·협력</u>	7. <u>늘봄학교 시설 및 아동친화적 공간개선</u>
8. <u>유치원 급식·안전 관련 제도 개선</u>	8. <u>초등돌봄 및 초등 방과후 지원에 관한 사항</u>
9. <u>유아교육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u>	9. <u>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u>
10. <u>유아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u>	10. <u>늘봄학교 관련 관계부처와의 프로그램·공간·인력 등 협력·연계</u>
11. <u>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u>	11. <u>늘봄학교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프로그램·공간·인력 등 협력·연계</u>
12. <u>유치원 평가 지원</u>	12. <u>늘봄학교 관련 민간 및 유관</u>

13. <u>육아정책연구소의 운영 지원</u> 14. <u>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u> 15. <u>유치원 신설·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u> 16. <u>유치원회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u> 17. <u>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투자 확대에 관한 사항</u> 18. <u>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u> 19. <u>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20. <u>국립·공립 유치원장 임기제도·공모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21. <u>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u> <신 설> <신 설> ⑥ <u>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기관과의 프로그램 협력·연계</u> 13. <u>늘봄학교 관련 지역대학과의 프로그램·공간·인력 등 협력·연계</u> 14. <u>초등돌봄 서비스 간 격차 완화</u> 15. <u>교육 기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16. <u>교육 기부 관련 공익 법인 관리</u> 17. <u>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u> 18. <u>시·도별 교육 기부 운영 상담 지원</u> 19. <u>늘봄학교 현장 안착 지원</u> 20. <u>시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인프라 구축 현황 점검·관리 및 컨설팅</u> 21. <u>늘봄학교 현장방문 등 각종 행사 운영 및 지원</u> 22. <u>늘봄학교 관련 각종 유관 단체 소통·협업에 관한 사항</u> 23. <u>중등 방과후학교 지원</u> <삭 제>	1. <u>초등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u> 2. <u>초등 돌봄체계 관계 부처 협력 및 연계체제 구축</u> 3. <u>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계획의 수립·시행</u> 4. <u>초·중등 방과후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개선</u> 5. <u>초·중등 방과후학교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 및 지원</u> 6. <u>초·중등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u> 7. <u>교육 소외계층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u> 8. <u>교육 기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u> 9. <u>교육 기부 관련 공익 법인 관리</u> 10. <u>교육 기부 기관 인증제 운영</u> 11. <u>시·도별 교육 기부 운영 상담 지원</u> ⑦ 특수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⑦ ----- -----. 1. ~ 3. (현행과 같음)
---	---	---	---

4.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교육 지원

5. ~ 24. (생 략)

<신 설>

4. ----- 영유아의 -----

5. ~ 24.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영유아정책국) ① 영유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영유아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영유아지원관으로 하며, 영유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영유아지원관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의3 제3항제19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영유아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영유아정책국에 영유아정책과·영유아재정과·영유아안전정보과·영유아기준정책과·영유아교원지원과 및 교육보육과정지원과를 둔다.

<신 설>

⑤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⑥ 영유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교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영유아 보육·교육 법령의 제·개정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교육정책의 협의·조정 총괄
4. 유아교육·보육 실태조사
5. 보육통계 생산 및 관리
6.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7.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8.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 추진
9. 유치원·어린이집 지도·감독
10. 유치원·어린이집 행정처분 및 명단공표
11.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지도·감독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국립 유치원 지원 총괄
13.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지원
14. 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육진흥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15. 영유아 단체·기관 협력 및 국제교류
16. 중앙유아교육위원회 및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
17. 영유아 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인식 개선사업
1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19. 부모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0.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관리
21. 시간제 보육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영유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⑦ 영유아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재정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2. 영유아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및 결산

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
4. 유치원·어린이집회계 운영 지원
5.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재정 투자
6.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7.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
8. 유치원·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
9. 표준유아교육비,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지원 구조 개편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표준 영유아 보육·교육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
12.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13. 유아학비 지원에 관한 사항
14.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15.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적정관리
1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액 결정

<신 설>

17. 영유아 보육·교육비 부정수
급 방지
18. 영유아 학부모 부담 경감
19. 유치원·어린이집 설립·운영
지원
20. 유치원·어린이집 신설·운영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시행
21. 유치원·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 수립 및 관리
22.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
한 설립·운영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지원
24.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 평
가
25.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26. 직장보육서비스의 확충
27. 영아·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
28.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 지
원
- ⑧ 영유아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신체·정서·건강·보건

- 등에 관한 사항
2. 영·유아 감염병 예방
3. 영·유아 안전 등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교통안전 교육 지원
5. 영·유아 건강·보건·안전 관련
교직원 연수
6. 영·유아 학대 예방
7.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등에
관한 사항
8. 유치원·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9. 유치원·어린이집 통학버스
등에 관한 사항
10.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
한 건강·보건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
한 안전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
한 급식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
한 시설·환경개선 관련 통합 기
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영유아 정보화 총괄

<신 설>

15. 유치원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16.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운영 지원
17.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18. 유치원 나이스시스템 운영 지원
19. 어린이집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20. 누리과정 포털 및 어린이집 아이사랑시스템 운영 지원
21. 영유아 정보화 시스템 통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영유아 정보화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영유아 정보화 시스템 관련 타 부처 연계 협력
24.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보육전자바우처)의 운영 및 관리
- ⑨ 영유아기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 총괄
2.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유형별 통합 기준 수립 및

<신 설>

-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기준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기관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
 5.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총괄
 6.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단위 영유아 보육·교육 업무 이관 지원 및 조정
 8.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이관 및 기능 조정
 9.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영유아지원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⑩ 영유아교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인사제도 총괄
 2. 영유아교원에 관한 종합정책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개선

3. 영유아교원 양성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 개선

4.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 영
유아 비율 등 정원·배치에 관한
사항

5.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의 인
용 및 공모에 관한 사항

6.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복
무에 관한 사항

7.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보
수체계에 관한 사항

8.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처우개
선에 관한 사항

9. 유치원·어린이집 보육·교육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

10. 유치원·어린이집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11. 유치원 교원 평가에 관한 사
항

12.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
직원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 교원 및 보육교직원
의 임용에 관한 사항

14.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

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5. 유치원·어린이집 기간제 교
사, 강사 및 보조·대체교사 등에
관한 사항

16.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 정
원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
영에 관한 사항

17.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
한 원장의 임용 및 공모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
한 교직원 복무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
한 교직원 보수체계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
한 교사처우개선 관련 통합 기
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
한 보육·교육 활동 보호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

한 근무여건개선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교원평가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교원 양성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경력 및 자격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임용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관련 통합 기준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8. 영유아 통합 교원 양성기관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 조정·운영
29. 영유아 통합 교원 양성 관련 교직과정의 설치·폐지 및 교직 관련 학과의 운영 지원
⑪ 교육보육과정지원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유아 보육·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2. 유치원·어린이집 학사운영 지원
3.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 지원
4. 영유아 보육·교육과정 운영 지원인력 활용
5.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6.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 및 일수에 관한 사항 및 운영지원
8. 유치원·어린이집 체험학습 운영 지원
9. 영유아 이음교육에 관한 사항
10.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보육·교육과정 등 개편 지원
11. 영유아 보육·교육 통합을 위한 보육·교육과정 프로그램 개편 지원
12. 시간연장형·종일형·방과후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제24조(한시정원) ① ~ ② (생략) ③ <u>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u>	<u>어린이집 등의 보육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u> 13. <u>영유아 기본학습능력 발달 교육지원 정책 수립·시행</u> 제18조(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한시정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	---

<u>에 따라 2024년 4월 30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교육부에 두며, 별표 9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40	692	52
·	·	·	
·	·	·	
특정직 계	85	91	6
·	·	·	
교육연구관	18	20	2
교육연구사	53	57	4
일반직 계	549	595	46
고위공무원단	11	13	2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5	16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2	36	4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u>사회복지사무관</u>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7	53	6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u>사회복지사무관</u> 또는 편사연구관	194	208	14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u>사회복지주사</u> 또는 편사연구사	137	148	11

·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 사보·보건주사보·식품위생주 사보·시설주사보·방재안전주 사보· <u>사회복지주사보</u> 또는 전 산주사보	· 42	· <u>48</u>	· <u>6</u>
· 행정서기·사서서기·공업서기· 보건서기·식품위생서기·시설 서기·방재안전서기· <u>사회복지</u> <u>서기</u> 또는 전산서기	· 21	· <u>23</u>	· <u>2</u>
·	·	·	·

[별표 1의2]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신설>	692	
·	·	·	·
일반직 계	<신설>	595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 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 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 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 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방 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신설>	55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 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 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 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 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 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 무관·식품위생사무관·사회복 지사무관 또는 편사연구관	<u><신설></u>	<u>206</u>	
--	-------------------	------------	--

[별표 7]

교육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2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1)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3명 (4급 1명, 7급 1 명, 전문경력관 나 군 1명)	.	2024년 12 월 31일까 지	.
2) 차관보	1명 (고위공무원단 가급)	.	2024년 12 월 31일까 지	.
3) 사회정책협력관 사회 정책총괄담당관	7명 (4급 또는 5급 1 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 명, 9급 1명)	.	2024년 12 월 31일까 지	.
4) 영유아정책국 영유아 지원관	.	<u>1명</u> (고위공무원단 나급)	.	<u>2027년 3월</u> <u>31일까지</u>
5) 영유아정책국 영유아 교원지원과	.	<u>4명</u> (4급 1명, 4급 또 는 5급 1명, 5급 1명, 교육연구관 1명)	.	<u>2027년 3월</u> <u>31일까지</u>
6) 영유아정책국 교육보 육과정지원과	.	<u>4명</u> (4급 1명, 교육 연구관 1명, 교 육연구사 2명)	.	<u>2027년 3월</u> <u>31일까지</u>

[별표 9]

교육부 공무원 정원표(제18조제1항 단서 관련)

한시정원	현 행	개정안
2. 제24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삭 제>
총계	1	<삭 제>
일반직 계	1	<삭 제>
행정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1	<삭 제>